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4호의13서식] <개정 2023. 12. 28.>

(앞쪽)

신고번호 제 호

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

신고인	①상호(명칭)	②사업자등록번호
	③성명(대표자)	④생년월일
	⑤주소(사업장) (전화번호:)	

⑥ 사업장 규 모	[] 집단급식소: 1일평균 총급식인원	명
	[] 음 식 점: 사업장 면적	㎡
	[] 대규모점포: 사업장 면적	㎡
	[] 농수산물도매시장(공판장 · 유통센터): 사업장 면적	㎡
	[] 호텔 · 콘도: 객실 수	실

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

⑦ 자가처리계획	자가 처리(가열 · 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)				건조 등 부산물 처리		
	처리방법	처리능력 (kg/일)	설치 신고일	처리량 (kg/일)	부산물 발생량 (kg/일)	처리방법	처리자

⑧ 자가재활용계획	재활용량(kg/월)	재활용방법	재활용장소

⑨ 위탁재활용계획	위탁 재활용량 (kg/일)	위탁 계약비용 (원/kg)	위탁 업소명	업종	재활용 방법	위탁업소 주소 · 전화

「폐기물관리법」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0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직인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(뒤쪽)

<변경사항>

연 월 일	내 용	확 인